

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30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2. 27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3. 2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9. 3. 24

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1998. 3. 1일부터 행정소송의 제1심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되고 주민들의 소송청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소송업무에 적극 대처하고자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 1명에서 2명으로 함. (안 제2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종전에는 행정소송 1심이 고등법원으로 되어있어 전치주의에 의거 모든 행정소송 사건은 1차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친후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소송청구 건수가 다소 적었으나
 - 1998. 3. 1일부터 행정소송의 1심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 되므로써 전치주의에 입각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성이 없게 되어 소송 청구가 날로 증가요인이 있어 고문변호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※ 행정소송 처리현황 : 97년 3건, 98년 9건

· 99. 예산 확보 : 4,800천원(2명)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인원을 2명으로 증원하는 이유는
- 답 : 통영지원 1명, 창원지원 1명으로 수임할 계획임.
- 문 : 예산확보 이전에 조례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
- 답 : 행정절차가 잘못 추진되었으며, 향후 이런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9. 3.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